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857
----------	-----

제출년월일 : 2004. 4. 16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제 정 이 유

국내최초의 공룡발자국 화석 발견지이며, 세계3대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학술적 가치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고성역의 우수한 자연문화유산을 지역특화화 시키기 위해, 국내 최초의 자연사 세계엑스포로서 고성군에서 범국제적인 국제행사인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 가. 법인의 명칭 및 기구 (안 제2조)
- 나. 법인의 재산 (안 제4조)
- 다. 법인의 운영비 지원 (안 제5조)
- 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보고 및 검사 (안 제7조)
- 마. 공무원의 파견근무 (안 제8조)

3. 참 고 사 항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감독)
-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파견근무)

4. 입 법 예 고

- 기간 : 2004. 3. 9. ~ 2004. 3. 28. (20일간)
- (특이사항 없음)

5. 분 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의 명칭 및 기구) ①고성군이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②재단에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 재단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제3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엑스포 주제관 및 전시시설 설치와 부지조성
3. 엑스포 운영과 자원조달 및 집행
4. 엑스포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5. 기타 엑스포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법인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1. 고성군의 출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3. 기타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제5조 (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재단의 운영비 및 엑스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제4조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유재산의 대부)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7조 (보고, 검사 등) ①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 파견) ①군수는 엑스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성군에 귀속된다.

제10조 (공공시설의 사용) 군수는 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에 위탁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재단이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